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69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신장식 · 김선민 · 황운하
박은정 · 서왕진 · 백선희
차규근 · 강경숙 · 정춘생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정보를 공정하게 수집·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범위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범위에서만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매출액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5천만원”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의나 중대 과실의 여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u>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u>5천만원</u>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과징금) ① ----- ----- ----- ----- ----- ----- <u>해당 위반행위</u> <u>의 발생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u> <u>의 매출액의 100분의 20</u> ----- ----- ----- ----- ----- ----- <u>50억원</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5. 고의나 중대 과실의 여부</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